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남한의 책임* - 보호책임(R2P) 논의를 중심으로 -

송인호**
김강석***
조훈희****

논문초록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래 인권의 보편성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신의 확대 흐름,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성경적 관점 등에 비추어볼 때 보호책임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보호책임 이론의 발전과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책임이론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긴급한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남북한 특수관계론, 민족자결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한이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생명을 보호할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보호책임이론을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보호책임, 인권의 보편성, 남북통일, 북한 인권, 남북한 특수관계

*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제20140155호에 의한 것임.

** 한동대 법학부 교수

***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생

****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생

2015년 12월 22일 접수, 2016년 2월 1일 최종수정, 2월 9일 게재확정

I. 서론

유엔총회는 2015년 12월 17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에 회부하도록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ICC 회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2014년 2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가 북한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가 국제법상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 후(COI 보고서 전문, 이하 “COI 보고서”), 이를 토대로 유엔총회에서 2014년 11월 18일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으며, 안보리에서는 2014년 12월 22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향후 3년간 이사회에서 상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도 했다(United Nations, 2014a; 2014b). 특히 COI는 최종보고서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및 임시 재판소(ad hoc tribunal)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법 논리를 구성하였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COI는 안보리에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며 이 중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본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United Nations, 2014b: 23-25). 이후 1년 만에 다시 한 번 유엔총회차원에서 북한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북한인권책임자의 ICC 회부를 촉구한 것이다.

한편, COI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돕는 ‘현장 기반 조직(field-based structure)’의 설치를 권고하였고, 2014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그러한 권고를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2015년 6월 23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OHCHR”)는 북한 내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책임소재 규명 등을 담당할 유엔인권사무소¹⁾를 서울에 설립하였다(United Nations, 2015b).

1) 유엔인권사무소(서울, 웹사이트: <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

이러한 진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 주장과 함께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을 근거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였다. 즉,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그동안 국가주권 절대 사상에서 벗어나서 인도적 개입이론을 넘어 이른바 국제사회의 보호책임논의로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렇게 북한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인권침해, 체제불법과 관련하여 북한 인권침해의 최고책임자를 ICC에 기소해야 한다는 COI 보고서와 유엔총회의 결정의 이론적 근거가 된 이른바 보호책임(R2P)을 중심으로 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하며 북한 급변사태시 남한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북한 체제의 특징과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판단

1. 북한 체제의 특징²⁾

북한은 1당 독재 및 반대 세력에 대한 인권유린을 이념상 정당화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인 독재, 1인 가계에 대한 종교적 신성화 체제를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56년 8월 이른바 종파사건을 통해 소련파, 연안파 등을 제거하였고, 1967년 5월 그동안 김일성파를 지지해왔던 국내 공산주의 세력인 갑산파를 숙청하고 이른바 김일성 친솔파만을 남겨놓았으며, 1967년부터 1972년 사이에 행해졌던 대규모 숙청과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사이에 확립된 이른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10조 65개 조항)’을 통해 1인 우상화를 확립하였다. 김일성 가계를 우상화하는 내용의 10대 원칙은 북한에서는 헌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니며 체제이념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³⁾

또한 김정일이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나는,

2) 이하 북한 체제의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인호, 2015: 104-108 참조.

3) 한편 이 10대 원칙은 2013년 6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란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10개조 60개 조항). 대표적으로 동 원칙 제8조 제1항은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 생명(이념)을 끝없이 빛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종의 ‘이념적 순교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너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너수인 수령입니다,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 안아야 하며 어머니당과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신임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살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혁명적 수령관이 투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입니다.”(김정일, 1992: 165)

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은 수령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 순교사상을 체제이념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인권 개념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957년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이라는 명분으로 주민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시작으로 1971년 말까지 전 주민을 3개층 51개 부류로 분류하여 당시 전체인구를 기본계층(391만 명), 동요계층(315만 명), 적대계층(793만 명)으로 분류하고 사회생활 각 영역에서 차별을 하는 신분제사회를 구성하였으며 전국 각지에 수십 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억압체제를 수립하였다(현성일, 2011: 91-106).

2.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판단

COI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United Nations, 2014b: para. 24). COI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1) 사상 및 종교의 자유 침해, 2) 차별, 3) 이동 및 거주 자유 침해, 4) 식량권 및 기타 생명권 관련 침해, 5) 자의적 구금, 고문, 사형 및 정치범수용소, 6)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의 여섯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COI는 북한이 국가의 정치체제와 지도자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해왔고, 체제와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민들의 굶주림을 악화시켜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으며, 노동력과 기술 발전, 한반도 주도권 경쟁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강제실종을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범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북한의 안보, 사법기관, 당의 지도부 기관들,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지도하에 있는 중앙 및 지방 당 기관 뿐 만 아니라 반인도범죄를 범한 개인들을 방치

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해당 기관 상급자들도 개인적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14b: para. 1022-32).

특히 COI는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인권침해 가해자의 책임 뿐 만 아니라 보호책임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책임도 명시하였다. 즉,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을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북한의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실종의 대상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반인도범죄를 넘어서 관련국의 영토 주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이 한층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United Nations, 2014b: para. 1205). 이에 국제사회는 유엔과 함께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북한주민들을 북한 정부의 만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북한 당국과 범죄에 대한 최고 책임자를 겨냥한 강력하고 책임있는 조치와 인권 보호요구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14b: para. 1209-1210). 이렇게 북한인권 문제는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

III. 북한 급변사태시 보호책임의 적용가능성

1. 보호책임의 내용 및 근거

(1) 개념 및 성립 배경

보호책임이란 특정국가가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인종청소, 전쟁범죄 등 주요 국제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회가 나서서 해당 국가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며 이는 군사력 위주의 전통적인 국가 중심적 안보에서 인간 중심적 안보로 확장된 개념으로, 안보의 궁극적 대상을 국가가 아닌 인간으

4)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보호책임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은 이제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가 과거체제불법청산, 이행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 문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형, 진실과 화해위원회형 등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며 형사적인 처벌의 경우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청산 사례와 같이 그 처벌 범위를 최고위층으로 한정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송인호, 2014: 64-82).

로 보는 포괄적 안보개념이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4: 57-58). 전통적인 국가주권(국내문제불간섭 원칙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in domestic matters)의 이념을 제한하는 개념이며 기존의 국제사회 개입 근거로서의 ‘인도적 개입’ 논의를 ‘책임’과 ‘의무’차원으로 접근하는 이론이다(조정현, 2011b: 17-21).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이하 “ICISS”)’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래 2005년 코피 아난 당시 유엔사무총장은 보편적 인류규범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보호책임이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United Nations, 2005a), 또한 같은 해 9월에 열린 유엔 세계정상회의 결의와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의 재확인을 거쳐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발전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05a; 2006). 한편, 2009년에 발표된 반기문 유엔 총장의 보고서에서는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보호책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른바 세 가지 기둥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09). 첫 번째 기둥 전략에서는 인류에 대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두 번째 기둥 전략은 각 국가들이 첫 번째 기둥 전략에서 언급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울 의무(실태조사위원회의 설립 포함), 그리고 특히 세 번째 기둥전략에서는 국가가 자국의 영토관할권 내에 있는 거주민(populations)을 보호하는데 ‘명백히 실패한’(manifestly failing) 경우, 국제사회 ‘시의적절하고 단호한’(timely and decisive) 행동을 취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09). 전통적인 주권 개념에서는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 절대적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보호책임은 주권의 본질 중 하나라 자국민을 보호할 주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주권을 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2) 보호책임의 근거

보호책임 원칙은 기존에 존재했던 다양한 국제규범, 관행, 법에서 발전된 원칙이며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국제법적으로 보호책임 원칙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성립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조약이나 국제관습법과 같은 경성법(hard law)이 아닌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soft law)으로 계속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주장(Bannon, 2006: 1158; Scheffer, 2007-2008: 115; Welsh,

2006: 43)과 보호책임은 이미 국제관습법에 근접 내지는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었다는 주장이 대립한다(Barbour, 2008: 535; Evans, 2006: 704; MacFarlane, 2004: 988; Verlage, 2009: 171). 아직 국제관습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적확신(*opinio juris*)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광범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확실적인 국가관행의 존재, 특별히 영향받는 국가들의 참여 등의 두 요건을 충족하면 짧은 기간 내에도 새로운 관습이 형성될 수 있다”는 ICJ의 사례⁵⁾,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에 있었던 4차례의 개입 사례, 2000년대의 리비아, 코트디브와르 개입 사례 등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유엔총회의 의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국제관습법에 근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논란이 있긴 하나 보호책임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이라는 개념이 권리가 아니라 책임 이행을 위한 의무의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은 분명하다(Thakur, 2006: 246). 즉, 이제 한 나라의 인권문제는 단지 해당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규범에 위배되는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조정현, 2011a: 2).

2. 보호책임에 대한 고찰

(1) 보호책임의 공동체성

강대국의 자의적 적용에 따른 주권침해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는 없겠으나, 최근 현대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권, 국내문제불간섭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인권침해 지적에 대한 독재정권의 방어논리로 사용되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 1948년 세계인권선언 등으로부터 발전해온 주권을 뛰어넘는 ‘인권의 보편성’의 발전된 형태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호책임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보호책임은 타국의 상황에 대한 무책임을 전제하고 있는 개별국가의 단절된 주권개념에서 벗어나 전지구적 차원의 공동체성을 이론적 전제로 하고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성경의 지향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성경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5)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ICJ Reports(1969), p. 3 at 43 (para. 74)

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룻 3:12 등). 또한 예레미야서, 느헤미야서 등에서는 공시적, 동시대적인 공동체성 뿐 만 아니라 통시적, 역사적 공동체성까지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형제자매의 범위의 확장성(막 3:31-35), 초대교회의 공동체성(행 4:32-37), 복음의 전세계적인 차원의 승격(갈 3:26-29)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공동체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보호책임의 방향성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상황에 대한 적용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지극한 ‘사랑’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가 전제되어 있다. 즉, 지극하고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한 ‘사랑’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상황을 바라보면, 종교적인 유일사상, 카스트적 신분제 사회,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십 만 명의 인권 유린 등을 정당화하고 있는 체제 이념에 대해서는 단호히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라는 말씀을 악한 것을 그저 포용하고 용납해준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악인을 깨우쳐주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타일러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죽은 책임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악인에게 너의 그 행동은 악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돌이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진정한 자세이며 우리에게 그렇게 할 책임을 맡기신 것이다. 특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잠언 27:6)”는 말씀처럼 북한 민중 뿐 만 아니라 지배층까지 진정한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악한 체제에서 돌이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⁶⁾ 또한 북한의 처참한 인권침해 상황을 생각할 때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비유에 나타난

6) 기독교적 관점에서 북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송인호, 유코리아뉴스 칼럼(2013. 1. 29. 자) 참조(<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에 처한 북한주민들을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특히 남한의 경우 현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자 공동체로서의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3) 검토

이와 관련하여 과거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당전쟁론(Just War Theory)⁷⁾이 중세 십자군 활동의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된 것처럼 보호책임 역시 강대국의 약소국의 내정에 대한 무력개입의 명분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칫 평화를 반대하고 전쟁을 옹호하는 이론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는 말씀(마 10:34),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강조한 말씀(막 9:47) 등에 비추어 보면 성경의 평화는 단순한 기계적·현상적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 구원이라는 진리 선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전적인 절대적 기독교 평화주의 관점에서 평화를 해석하고 보호책임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접근일 수 있다.⁸⁾ 따라서 앞서 언급한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처럼 악행을 하는 자의 악행을 막고 그가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막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방어적인 무력행사를 단지 무력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경에 반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능력과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기독교 정신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권침해를 당한 자를 사후적으로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제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리하면, 보호책임의 내용 중 군사적 개입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강대국에 의한

7)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당전쟁론은 전쟁 자체를 의롭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악하다고 보나 특정한 상황 아래 부득이하게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전쟁은 평화를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정당성을 지닌 통치자의 지도, 적에 대한 사랑의 관점 등이 포함될 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한다(김두식, 2002: 58-59).

8) 기독교 평화주의에 대한 개관은 김주한, 2015: 39-45 참조. 한편, 성경을 절대적 비폭력주의로 해석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도 범죄자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행사가 허용됨을 논거로 하는 반박이 일반적으로 제기된다.

오남용이 없도록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는 있으나, 대량학살 등의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군사개입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호책임의 내용 중 제한적인 무력사용이 최선의 정책은 아닐지라도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며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 공동체로서 이웃의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현실정책으로서 차선책이 될 수는 있는 것이다. 다만, 보호책임에 따라 실제적인 군사적 개입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오남용을 방지하고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최후수단성(보충성), 현재성(긴급성), 비례성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행사는 필요최소한도로 제한된 범위에서 보호적·방어적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3. 북한 급변사태시 보호책임 원칙 적용의 문제

(1) 북한의 급변사태

북한 급변사태는 북한 지도자의 갑작스런 유고와 권력내부의 이상동향에 기인한 정치·군사·외교·경제적 통제력의 상실, 군쿠데타, 내전, 주민봉기, 대량난민발생(대량탈북), 대량아사,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통제력 상실,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지역 및 한반도·동북아에 대규모 안보불안 현상이 발생하거나 가까운 시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상황 등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으며(손광주, 2013: 27; 홍현익, 2013: 10),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외부의 군사개입이 불가피할 정도의 상황이 조성되는 상태 또는 돌발상황이 북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내부 불안정 상황으로 발전하고 주변관련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비군사·군사 개입이 필요한 상황, 북한의 정치·경제·사회·군사적 사정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나빠지거나 인도주의적 문제로 인해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태, 북한 정권이나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비상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러한 급변사태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아직은 북한의 상황이 급변사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현성일, 2013: 18). 그러나 최근 이른바 아랍의 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독재국가의 몰락은 늘 예측

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 특히 최근 북한의 경우 정치체제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3대 세습 유일사상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의 사유화와 시장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으며(윤인주, 2013: 128), 북한주민들 사이에 한류 현상 및 남한 체제에 대한 동경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강동완·박정란, 2015: 133)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심이반 등에 따른 급변사태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보호책임 적용의 한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근의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의 등장과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및 보호책임에 대한 COI 보고서 발표로 인해 보호책임 원칙을 적용한 북한 급변사태시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및 남한의 우선적 개입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고찰한 보호책임의 세 가지 전략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동 전략의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COI의 보고서에서 지적된 반인도범죄 책임자의 ICC 회부 촉구는 보호책임의 적용이 세 번째 기동 전략으로 이어지는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보호책임 논의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적극적(군사적) 개입을 포함하고 있다. 2001년 ICISS의 보고서에 따르면, 적극적 개입을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정당한 권위’, 해당 국가 내 심각하고 상당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정당한 명분’, 피해국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의도’, 평화적 노력과 방책들이 모두 시도된 이후 결정된 ‘최후의 수단’, 인명보호를 위한 필요 규모와 대응강도의 대한 ‘수단의 비례성’, 마지막으로 적극적 개입시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합리적 전망’등의 요건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ICISS, 2001: para. 2.29.).

위 요건 중 ‘정당한 명분’과 ‘정당한 의도’의 관점에서는 유엔총회의 결의로 설립된 COI가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해 반인도범죄라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합리적 전망’ 요건 또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북한의 만연한 반인도범죄의 중단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최후의 수단’, ‘수단의 비례성’의 경우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그동안 발생한 인권유린의 증거인멸

목적으로 정치범수용소에서 대량학살 등이 발생하는 등 개입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필요최소한도의 군사적 개입이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당한 권위’ 요건이 문제가 된다. 북한 급변사태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개입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조건인 ‘정당한 권위’는 안보리 승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보리 승인이라는 보호책임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급변사태시 보호책임을 논거로 한 신속한 개입을 위해서는 20세기말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국제사회의 개입이 이루어진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인도적 개입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보호책임이론 자체가 인도적 개입을 더 확대하여 ‘개입할 권리’가 아니라 ‘개입할 책임’으로 발전시킨 논의이므로 같은 논리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4. 안보리의 승인 없는 보호책임 적용 가능성

(1) 견해의 대립

극단적인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개입해서 보호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관습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영토 침범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주권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여겨져 왔다(Crawford, 2006: 89). 그러나 유엔헌장에 대한 전통적 해석과 달리 대량학살이라는 희생을 막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비군사적 또는 군사적 개입까지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법에 의해 국가주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해석과 달리,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주권은 국제법의 정의 하에 합법성을 획득하며(Fassbender, 2003: 129), 부패한 고위층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 대부분의 이익을 무시하는 정부의 국가주권 주장은 보호할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량학살과 같이 국민의 주권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정권이 국가주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위 주장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호책임의 근거가 되는 인도주의적 개입권을 뒷받침하는 1990년대의 일련의

개입 사례들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직접적인 승인은 아니었지만 개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후에 해당 개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는 점도 논거로 들고 있다 (Chandler, 2004: 59).⁹⁾

인도주의적 개입에 안보리의 결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은 유엔헌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제적인 평화 유지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 부상하는 국제관습법은 유엔 헌장 자체와 광범위한 살인과 인종청소의 공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법에 중점을 둔다(Peter, 2009: 514). 특히 부상하는 국제관습법이 강한 설득력을 갖는 것은 인류 비극에 대한 책임은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보리의 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류 비극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Peter, 2009: 514).

한편, 안보리의 결의 없는 개입에 반대하는 주장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무력 사용 금지원칙에 주목한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위한 무력행사 또는 위협은 국제법과 배치되며, 각국은 각 영토와 영토 내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다른 나라가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¹⁰⁾

반면 최근에 만들어진 관습인 안보리의 결의 없는 개입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은 유엔의 운영원칙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문 맥락의 전후 관계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ICISS, 2001: 163-64). 특히 유엔 헌장은 서문과 제1조에서 국제기구인 유엔의 목적이 인권옹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더 나아가 1945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한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처우를 단순히 해당 국가의 국내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¹⁾ 또한 인도

9) 예를 들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나토(NATO)의 군사개입은 법적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토의 해당 개입은 인도주의적 목적에 부합했고 도덕적 적법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유엔 헌장에 대한 전통적 관점이 아닌 새롭게 인정되고 있는 세계 규범을 반영한다는 것이다(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n Kosovo, 2000: 4-5).

10) Declaration on the Principles of Friendly Relations i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25(1970)와 the Definition of Aggression i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314 (1974)에 기하여 외교적인 항의 또는 진정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형식의 개입이 배제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주장을 더 이상 보기 힘들다.

11) The Genocide Convention”, “The 1966 Covenants on Civil-Political and Economic-Social-Cultural

주의적 개입(보호책임) 지지자들은 국가주권과 불간섭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극단적인 사례에 대한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¹²⁾ 일반적인 국제법이나 특히 유엔 헌장조차도 불간섭 원칙과 국가주권 존중에 절대적인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국제법 체계의 기초가 되는 가치들은 유엔 헌장 서문에서 촉구하는 “인간의 존엄 및 가치(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의 보존을 포함한다는 것이다(ICISS, 2001: 164). 즉,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과 다른 기초헌장원칙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 인명손실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주권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대량학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ICISS, 2001: 164).

(2) 안보리 승인 없는 개입 사례

한편, 강행규범(jus cogens)에 해당하는 무력 사용 금지 규정이 인도적인 목적의 군사개입의 합법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의 쟁점은 인도적 개입을 통한 보호책임(R2P)에 대한 관습법이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보다 우선권을 갖느냐가 아니라,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규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실질적 관행과 변화하는 동향에 따라 해당 금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적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관행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에 있었던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라이베리아 개입(1990), 시에라리온 개입(1997), 1991년의 이라크 북부 지역에 대한 비행금지구역(No-Fly Zones) 설정, 그리고 1999년에 코소보와 구유고슬라비아연방에서 이루어졌던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활동 등의 개입 사례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한 보호책임(R2P)이 법적인 관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특히 이들 개입이 아프리카, 중동, 유럽이라는 세 곳의 서로 다른 지리적 영역에서 이루어

Rights”와 같은 국제조약과 아프리카, 북남미 대륙 그리고 유럽의 지역조약 등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다.

12) 특히 Marc Weller는 정부를 세운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해를 입히는 정부는 적법성 자체를 잃는다고 주장한다(Marc Weller, 1999: 20-22).

졌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 8월, ECOWAS의 ECOMOG(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Monitoring Group, 서아프리카평화유지군)은 라이베리아에 정전 선포, 민주주의 부활, 무고한 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유린의 중단을 이루기 위해 개입을 강행했다(ICISS, 2001: 166-67). 또한 ECOWAS는 1997년 8월 ECOMOG에게 시에라리온에 대한 경제적 통상 금지령을 집행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할 권한을 주었다. 지역적인 동의나 안보리의 승인은 없었지만 두 차례 개입 모두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한 보호책임(R2P)권 행사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은 후에 모두 국제적인 지지를 얻었다. 유엔 안보리 의장도 두 차례의 개입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고, 유엔 헌장 제8조에 기초하여 두 국가의 상황을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결의안을 여러 개 채택했다.¹³⁾ 결과적으로 이 두 사례에 대한 안보리의 조치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한 보호책임(R2P)을 차후에 승인하는 소급적 확정(retroactive de jure: seal)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러시아와 중국의 정치적 반대로 인해 보호책임의 실제 실행에는 실패했으나 1990년 후반 코소보 사태에 대해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한 보호책임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ICISS, 2001: 167). 이에 NATO가 나서서 폭격을 감행했고 코소보 사태를 진정시켰다. 작전 수행에 대해 NATO가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적은 없으나 유엔은 추후에 NATO 작전의 결과에 대해서 결의안 1244(1999)를 통해 비준을 하기도 했다(ICISS, 2001: 167).

이렇게 코소보 사태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반응은 특수연합(ad hoc coalition: 관심 또는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연합을 형성하여 만든 집단)이나 지역적(국제) 기구의 개입이 가지는 인도주의적 정당성에 집중했으며, 과거 식민지 경험 때문에 절대적인 국가주권을 강조했던 아프리카 국가들도 최근에는 오히려 국제적 분쟁에 대한 적극적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례들은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주권이 더 이상 불가침한 것은 아

13) 결의안 788(1992)과 866(1993)은 라이베리아의 반란파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와 ECOMOG 군대와 함께 유엔정전감시단(Observer Mission)의 공동 배치, 결의안 1132(1997)는 시에라리온의 군사정권(The Junta)과 RUF(Revolutionary United Front, 혁명연합전선)에 대한 무기 및 석유금수 조치와 여행 금지령을, 또한 결의안 788과 1132는 각각 ECOWAS의 협정조건 수행을 승인했다(United Nations, 1991; 1992a; 1992b; 1993; 1997).

남을 보여 주고 있다.

5.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유엔안보리 승인 없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북한 급변사태시 남한의 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이 인근 국가의 단독개입이 아니라 지역적 국제기구를 통한 여러 국가들의 공동개입이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남한의 보호책임으로서의 우선권 내지 단독개입의 가능성에 대한 논거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제헌 헌법 제4조(현행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적어도 국내법적으로는 북한 지역 역시 남한의 주권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헌법 제4조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하고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4조의 신설 및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북한의 성격을 이중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진다는 것이다.¹⁴⁾ 또한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유엔으로부터 국가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한이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므로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¹⁵⁾

14)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하략).” (헌법재판소 1993. 7. 29. 92헌바48)

15)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

한편, 이미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에서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규정하여 남북사이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님을 상호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¹⁶⁾

6. 소결

이상 살핀 바와 같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래 인권의 보편성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확대 흐름,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성경적 관점 등에 비추어볼 때 보호책임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보호책임 이론의 발전과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승인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책임이론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긴급한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미 남북한 상호간에 합의사항이기도 한 남북한 특수관계론, 민족자결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한이 우선적으로 개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남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상관없이 북한 상황에 개입하여 북한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생명을 보호할 1차적인 권한과 책임(보호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 남·북한의 관계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16) 이러한 남북한 특수관계론외에도 동서독 분단시기 서독의 입장인 전체로서의 독일(Deutschland als Ganzes) 개념을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여 대한제국이래로 ‘전체로서의 한국’이 존속해왔고 상해 임시정부, 분단 후에는 대한민국으로 국내외적 정통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남한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순천, 2012: 250 ; 김병기, 2010: 102).

IV. 결론

북한 급변사태시 남한의 개입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해야 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함이 지나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작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머뭇거리려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남한이 체제 경쟁의 승자로서 관여하는 측면으로 접근하여 거부감을 갖는 차원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승자의 관여가 아니라 ‘형제로서의 책임과 의무’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책임은 북한의 인권침해, 체제불법 가해자들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차원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체제의 악한 점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가해자인 ‘사람’ 자체를 ‘사탄’과 동일시하거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아닌 ‘증오’를 품어서도 안된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급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영원히 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러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구원을 얻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이다(벧전 3: 9).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이 말씀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적으로 다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 사건’, 무섭도록 철저한 공의와 뜨겁고 뜨거운 사랑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순된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분의 독생자를 공의를 위한 속제물로 바치는 ‘자기희생’, 즉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 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 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잠언 24: 11-12)”라고 말씀하시며

북한주민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시대적인 사명으로서의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보호책임이론을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남한의 주도적인 책임(개입)의 근거로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동완·박정란 (2015). 『사람과 사람-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서울: 너나드리.
- 김두식 (2002). 『칼을 쳐서 보습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 서울: 뉴스앤조이.
- 김병기 (2010).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초.” 『저스티스』. 121. 한국법학원.
- 김정일 (1992).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이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86. 7. 15.)』. 김정일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주한 (2015).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였는가?”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 손광주 (2013). “북한특징의 급변사태와 대량 탈북난민 예방·통제대책: 식량 긴급구호·사회안정화 방안.”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난민 발생전망과 대책』. 서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국가발전연구원. 코리아정책연구원.
- 송인호 (2015). 『통일법 강의』. 서울: 법률신문사.
- _____ (2014).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사례를 통해 본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의 기본 방향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442.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 윤인주 (2013).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천 (2012). 『조약의 국가승계』. 서울: 열린책들.
- 조정현 (2011a). “리비아 사태와 보호책임, 그리고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 _____ (2011b). 『보호책임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 현성일 (2011).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도서출판 선인.
- _____ (2013). “북한급변사태시 대량 탈북난민 발생 가능성 평가.”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난민 발생전망과 대책(북한급변사태시 대응책연구 VI)』.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코리아정책연구원.
- 홍현익 (2013).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대응방안.” 『세종정책연구』. 29. 13-19. 세종연구소.
- Bannon, Alicia L. (2006).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U.N. World Summit and the Question of Unilateralism.” *Yale Law Journal* 115. 1157-1164.
- Barbour, Brian and Brian Gorlick (2008). “Embrac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 A Repertoire of Measures Including Asylum for Potential Victim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20(4). 533-566.
- Chandler, David (2004).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mposing the ‘Liberal Peace’.” *International Peacekeeping* 11(1). 59 - 81.
- Crawford, James R. (2006).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vans, Gareth (2006). “From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24 Wisconsin International Law Journal* 24. 703-722.
- Fassbender, Bardo (2003). “Sovereignty and Constitutionalism in International Law.” in Neil Walker (Ed.) (2003). *Sovereignty in Transition*. Oxford: Hart Publishing.
- ICISS: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search, Bibliography, Background*.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n Kosovo (2000). *The Kosovo Report: Conflict, International Response, Lessons Learn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cFarlane, S. Neil, Carolin J. Thielking and Thomas G. Weiss (2004).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s Anyone Interested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Third World Quarterly* 25. 977-992.
- Peter, Anne (2009). “Humanity as the A and Ω of Sovereign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3). 513-544.
- Scheffer, David (2007-2008). “Atrocity Crimes Fram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0. 111-135.
- Thakur, Ramesh (2006).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Ramesh Thakur (Ed.) (2006). *The United Nations Peace and Security, from Collective Security to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ited Nations (1970).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625 (XXV).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 Documents*. A/RES/25/2625.
- _____ (1974).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3314 (XXIX). Definition of Aggression.” *UN Documents*. A/RES/29/3314.

- _____ (1991). “Note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Documents*. S/22133.
- _____ (1992a).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Documents*. S/23886.
- _____ (1992b). “Resolution 788 (1992):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3138th Meeting, on 19 November 1992.” *UN Documents*. S/RES/788 (1992).
- _____ (1993). “Resolution 866 (1993):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3281st Meeting, on 22 September 1993.” *UN Documents*. S/RES/866 (1993).
- _____ (1997). “Resolution 1132 (1997):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3822nd Meeting, on 8 October 1997.” *UN Documents*. S/RES/1132 (1997).
- _____ (2005a).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UN Documents*. A/59/2005.
- _____ (2005b).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6 September 2005.” *UN Documents*. A/RES/60/1.
- _____ (2006). “Resolution 1674 (2006):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5430th Meeting, on 28 April 2006.” *UN Documents*. S/RES/1674.
- _____ (2009).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uments*. A/63/677.
- _____ (2014a).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8 December 2013.” *UN Documents*. A/RES/68/183.
- _____ (2014b).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uments*. A/HRC/25/63.
- _____ (2015a).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8 December 2014.” *UN Documents*. A/RES/68/167.
- _____ (2015b).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uments*. A/HRC/28/L.18.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erlage, Christopher (2009). *Responsibility To Protect*. Tübingen: Mohr Siebeck.
- Weller, Marc (1999). *Armed Samaritans: Humanitarian Intervention Cases*. Cambridge: Documents & Analysis Publishers.

Welsh, Jennifer M. (2006).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Securing the Individual in International Society?" in Oliver Jütersonke and Keith Krause (Eds.) (2006). *From Rights To Responsibilities, Rethinking Interventions For Humanitarian Purposes*. Geneva: Programm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bstract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and Responsibility of South Korea – Focusing on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

In-Ho Song (Handong Global University)

Kang-Seok Kim (3L,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Hun-Hee Cho (2L,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Sinc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f 1948, in the light of the growing trend of respecting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and the biblical perspective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is an international law principle which is consistent with Christianity. Additionally, having examined the development i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ory, when a sudden change and widespread and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occurs in North Korea, an urgent interven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justified in the basis on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ory. Giving comprehensive consideration to the theory of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principle of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it would be safely said that South Korea is primarily charged with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freedom, human rights and life. In this regard, in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ory is necessary to be widely accepted and developed in its theory.

Key Words: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Korean Unificati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